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77

발의연월일: 2021. 3. 18.

발 의 자 : 이 영·박 진·김용판

권성동 · 홍문표 · 조태용

유창현 • 추경호 • 송언석

신원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·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이는 결국 보육 및 교육의 질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·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 일까지"를 각각 "2024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	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
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	한 감면) ①
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	
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	
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을	
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	
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	
를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 면제	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
한다.	
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	②
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	
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	
한다)를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	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
면제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